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과세면제에”를 “불균일과세에”로 한다.

제4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과세면제를”을 “불균일과세를”로 하며, 동조 제2항 단서중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하고, “과세면제할”을 “경감할”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과세면제</u>에 관한 ·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 지를 관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p> <p>제4조 (<u>면제신청</u>)①이 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u>과세면제</u>를 받고 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 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이 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봉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u>과세면제</u> 대상 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 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u>과세면제</u>할 수 있다.</p>	<p>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u>불균일과세</u>에.....</p> <p>제4조(<u>경감신청</u>) ① <u>불균일과세</u>를</p> <p>②</p> <p>..... <u>경감</u></p> <p><u>경감</u>할</p>

도시가스사업법 (부분발췌)

제3조 (사업의 허가) 1. 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서울특별시
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
한다)을 변경 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